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2026년 8월 11일 시행 예정인 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¹⁾에 따라 ‘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’²⁾의 설치 근거를 「국가재정법」 별표 1³⁾에 신설함.

II. 검토의견

□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개정 관련 개정문 정비 등

개정안은 지난 2026. 3. 10. 공포되어 2027. 1. 1.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19호⁴⁾의 별표 1 및 부칙 제1조를 그 시행 전에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, 이번 개정안을 위 법률 제21419호의 시행일보다 앞

-
- 1) 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조(목적)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·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 - 2) 「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5조(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·운영·관리)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원 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② 특별회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·관리한다.
③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·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3) 「국가재정법」 제4조(회계구분)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,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,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,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.
 - 4) 「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」을 특별회계 신설 근거로 추가 등

선 2026. 8. 11.에 먼저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음(안 부칙 제1조).

그러나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의 별표 1 제25호를 제26호로 이동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어, 개정안과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이 모두 최종 시행되었을 때 어떠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는 것인지 쉽게 파악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.

이에 법률 개정 내용의 명확성 제고 차원에서 개정안 및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의 시행에 따른 별표 1 제25호 및 제26호의 내용을 명확하게 적시하는 한편, 개정안에 누락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 개정 부분의 시행일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음.

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·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)